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 발의: 남 해 석 의원)

의안 번호	26-78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6. 8. 21.

발 의 자: 남해석, 서종수, 장영준,
차해영, 배동수, 장정희,
고안경, 허디모데 의원(8인)

1. 제안이유

마포아트센터 문화·체육프로그램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, 복지증진을 달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마포아트센터 문화·체육프로그램 이용 차량 주차요금 정비(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소관부서: 문화예술과

라. 입법예고: 2026. 8. 24. ~ 8. 28.(예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나목7)의 문화·체육프로그램 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문화·체육프로그램 차 량	-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무료 -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시간 무료 - 추가 10분당 500원
----------------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문화예술진흥법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091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]

- 제3조(시책과 권장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
조례」

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별표 제1호 나목 7) 주차요금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별표 제1호 나목 7) 주차요금 조항 정비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
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김지혜
연 락 처	02-3153-8355